

# 질의회신

박영모  
지방세 운영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추징 ‘정당한 사유’ 여부

(Q) 질의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공장을 신축하는 동안 기계설비가격의 상승(50%이상)으로 채산성 악화를 우려하여 부득이하게 당초 감면받은 공장용 부동산을 매각하였던 바, 이후 소유권을 환원하여 당초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



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면서 그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그에 관한 등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외 다수)한다고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는 내부적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의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외 다수)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매각 사유가 공장 창업 당시의 설비기계가격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전에 창업시에 설비가격의 상승을 감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 채산성 개선을 위하여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채산성 악화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채산성 악화를 우려한 매각은 사업주 스스로가 선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후에 소유권을 환원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541, 2011. 2. 1.】

## 2. 신규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골프회원권 취득 후 해당 골프장이 준공 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되고 그 승계 받은 골프장사

업자는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가 “골프장 승계업자는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받을 경우 그 골프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 · 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며 볼 수 없으므로(대판02두5115, 2003.10.23참조), 골프회원권 취득 후 해당 골프장이 준공 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승계한 골프장사업자가 기존 골프장사업자가 분양한 골프회원권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다가, 관련 법원에서 기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의 지위가 인정(서울고법 2009나96085, 2010.4.23)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입회금 납부 등 실질적 취득 행위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골프회원권을 새로이 골프회원권을 교부받는 경우라면 비록 기존의 골프회원권과 등록번호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23, 2011. 2. 10.】



### 3.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중과 여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었으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중과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 사실관계 ||

- 등록현황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  
(회원제 645,131m<sup>2</sup>, 대중제 370,533m<sup>2</sup> 각각 등록)
- 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
- 그린피 : 회원제(비회원) 주중 102,000원, 주말 136,000원, 대중제 주중 51,000원, 주말 68,000원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같은법 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같은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제5항제2호에서 중과대상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시작 전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특히, 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 골프코스 등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등록 하여야하고(법19조,령20조),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법제14조 · 시행령제13조),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받은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전환할 수 없는 등(법제13조, 시행령12조1호) 회원제골프장은 대중골프장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할 것입니다.

다. 한편,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과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중과시설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고(대판 92 누15154, 1995.5.27 참조). 그 영업허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중과시설 및 허가요건 등을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이 중과대상으로서 실체를 구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대판 89누3922, 1990.1.25 참조).

라. 따라서 재산세 중과대상 골프장의 요건으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625, 2011. 6. 10.】

#### 4.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재산세 납세의무



민자역사(驛舍) 역무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사실관계 ||

- 건축주 : 00역사(주)
- 전체연면적(판매시설포함) 81,000 $m^2$  중 역무시설(쟁점부동산) 8,543 $m^2$
- 사업추진 경위
  - 철도청장과 00역사(주)간의 “00민자역사”건설 사업추진협약(1999.12)
  - 쟁점부동산에 대한 국가귀속 예정통보(2009.4.7.), 준공(2009.4.10), 건축주 명의 보존등기(2010.8.5)
- 과세기준일 현재 역무시설로 사용



가.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소유자란 재산을 매수하여 대금의 지급 등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판 94누13831 1995.5.23, 대판98두11458, 2000.12.8)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용현황을 보면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법률 제7052호, 2003.12.31. 폐지되기 이전의 법) 제1항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물중 국유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따라 00역사(주)와 철도청이 체결한 협약에서(협약서제9조) 역무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철도청장의 소유로 무상귀속토록 예정되어 있고, 쟁점 부동산의 세부적인 건축과정은 철도청의 위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와 00역사(주)가 체결한 공사시행협약서에 따라 추진되었고, 쟁점 부동산은 역무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 불가하고, 00역사(주)가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약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회기반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사실상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대법원 84누188, 1984.8.21,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913, 2010.4.9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 쟁점 부동산은 준공일로부터 사실상 국가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비과세가 타당하다 사료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626, 2011. 2. 10.】

## 5. 자동차대여사업자 취득세 신고납부 기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취득후 60일이내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등록전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의2에서 개인은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취득세액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검토결과

#### ①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관련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2009.12.24 등 참조)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가 자동차 취득 후 60일이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동차 등록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가 취득세 분할납부 대상 해당여부

- 개인이 차량을 2013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의 50%를 납부하고, 그 나머지 50%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에서 법인이라 함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



하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142, 2006.1.27 참조) 자동차대여사업자(법인)가 개인 및 법  
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면 취득세 분할납부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다만, 위 ①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55, 2011. 2. 14.】

## 6. 소유권이전 등록세



○○○주택보증(주)이 분양보증한 주택건설사업장이 주택 준공전 분양보증사고로 주택건설사업 주체에게 보존등기 후 ○○주택보증(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경우, ① 등록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②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가.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기타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검토결과

- ① 주택분양 보증책임의 이행을 조건으로 미완성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
- 구 「지방세법」 제130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건설사업장의 분양보증사고로 주택건설 사고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주택건설사업 주체를 대위하여 분양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양도담보계약서상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분양보증 환급이행금액 및 이자기타비용 등의 채권·채무액을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지방세운영-1231, 2010.3.24 참조) 과세권자가 법인장부, 채권·채무내역 및 관계인의 확인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등록세 적용세율 관계하여 무상취득이란 취득행위에 대하여 어떤 대가도 없어야 할 것이라(지방세심사2004-166, 2004.6.28 참조), 대한주택보증(주)이 주택건설사업장 보증사고로 인해 미준공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서에 따른 대물변제 형식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면 취득에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적용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입니다.
- ②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감면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③ 다만, 위 ①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696, 2011. 2. 17.]



## 7. 지방소득세 사업장 면적 및 수정신고

### (Q) 질의내용 1

원자력발전소의 방파제와 호안을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배수시설로 보아 사업장 연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Q) 질의내용 2

수정신고 기간 60일(2006 귀속년도 이전 귀속년도 분)이 지난 것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것도 수정 신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 (A) 회신내용 1

가.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시설물 중 방파제와 호안은 동해안의 파도로부터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건축 물(급·배수시설 포함)을 보호하고, 급·배수시설 내에 토사 등 불순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원자력발전을 위한 냉각용 해수의 급·배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배수관로는 원자로에 있는 취수펌프에 의해 냉각용 해수가 복수기로 전달되고 열전도 후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조세심판원 2009지755, 2010. 5.24.)

나. 「급배수시설이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 기능을 발휘하면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대법원 89 누 5639, 1990.7.13) 할 것이나, 영광원자력발전소 복수기 냉각용 수로는 서해안의 지형특성상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취·배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수로를 굴착하여 해수를 유입 또는 배수하기 위해 축조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취수방식에 따라 영광원자력은 수로방식이고 울진원자력은 항만취수방식으로 설비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장연적의 포함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주된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영광원자력의 사업장 연면적 포함여부는

해당 과세권자가 시설물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A 회신내용 2

- 가. 수정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나. 구지방세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7조의3제1항에서는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군별 안분 계산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각각 2004. 4. 30. 및 2005. 4. 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동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므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10년 5월에 시·군별 안분비율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2003 사업연도 등에 대한 신고납부 내용 중 과부족분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가 있었다면 납부세액의 확정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시·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세액을 안분하는 시·군 중 지방세법 제30조의4제2항과 같은 부과의 제척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며, 각 시·군은 법인세할 주민세 또는 현행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안분된 부분에 관하여는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제척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법률관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척기간 도과로 시·군별 안분비율에 따라 안분된 세액에 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군에서 일정 세액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시·군에까지 안분비율 재산정 등을 이유로 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유권해석 2011.1.29)

라. 따라서,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할 주민세(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의 과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세의 제척기간 만료 전에 과세관청이 보통징수 방법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고,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세액이 안분된 특정 시·군의 사업장 면적과 관련된 경정결정을 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각 시·군의 사업장 면적 등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시·군별 안분율을 재산정하고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10년 5월 이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각 시·군에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741, 2011. 2. 18.】

## 8.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경과규정 효력



새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재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서울시 감면조례와 관련된 별도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 해당 여부



- 가.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에서 재개발주택 조합원에 대한 감면대상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현재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개정(2008.3.12일 제4611호),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일 현재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 하도록 개별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되어 재건축조합원과 관련된 감면규정이 같은법 제74조 제3항으로 신설되면서 기존 조례의 부칙규정이 반영되지 않음
- 나. 법률의 일부 개정인 경우에는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규정

이 없고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 11168 판결 참조) 전부개정 할 때에 그 효력 여부를 확인하여 전부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구체적으로 감면요건이 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누락된 부칙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다. 분법된 새 지방세특례법은 제정 법률로서 부칙 제3조에 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종전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칙 규정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며, 종전의 감면조례가 폐지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정된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라 사료 됩니다.

【지방세운영과-786, 2011. 2. 22.】

## 9. 종교단체의 아동복지시설 비과세 여부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타)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직접사용”의 범위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사업의 주체와 그



내용적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종교단체가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나. 교회가 목적사업에 사회복지 사업 및 사회복지 시설운영업을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종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단체와 각각 별개의 비과세 대상단체로 구분하고 있는 규정 등을 비추어 볼 때, 종교단체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을 설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교육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례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운영과-785, 2011. 2. 22.】

## 10. 일시적 2주택의 정당한 사유



건축물(호텔)과 연접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그 부

[지방세분야]  
**질의회신**

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5. 11. 21. 95누3312)하여야 하는 바.

- 다. 쟁점토지의 사용현황 및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를 보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써 쟁점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점, 건축물 및 쟁점토지의 앞쪽과 뒤쪽에는 도로가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ㄷ”자 형태의 훈스로 둘러싸여 있으며 쟁점토지에서 건축물로 직접 출입하는 통로가 있는 점, 건물 정면에 주된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위치하고, 지하주차장 입구와 바로 연접하여 쟁점토지로 출입하는 지상주차장(쟁점토지) 출입구도 함께 있는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라. 쟁점 토지가 건축물과 차별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용 현황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범위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쟁점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로써 과세권자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876, 2011. 2. 25.】 ☺